

1. 개정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,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(안 제23조의2제1항)
- 나. 사업결산보고서, 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상황, 사업결과보고서의 서식을 정함(안 제23조의2제2항,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2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,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)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.

②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업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7호의5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.

③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은 별지 제17호의6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.

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.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] 공제조합
[] 유통지원센터

사업결산 보고서

(앞쪽)

회계연도 : 년도

조직 개요	조합(센터)명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① 재무상태표

자 산		부 채	
구 분	금 액(원)	구 분	금 액(원)
자산		부채	
Ⅰ. 유동자산		Ⅰ. 유동부채	
(1) 당좌자산		- 미지급금	
- 현금		- 예수금	
- 보통예금		- 단기차입금	
- 미수금		- 선수금	
- 선급금		-	
-		Ⅱ. 비유동부채	
(2) 재고자산		- 장기차입금	
- 제품		- 퇴직급여충당부채	
- 원재료		-	
-		부 채 총 계	
Ⅱ. 비유동자산		자본	
(1) 투자자산		Ⅰ. 자본금	
- 장기성예적금		- 조합원출자금	
-		Ⅱ. 자본잉여금	
(2) 유형자산		Ⅲ. 자본조정	
- 비품		Ⅳ. 기타포괄손익누계액	
- 시설장치		Ⅴ.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	
- 차량운반기구		- 법정적립금	
-		- 임의적립금	
(3) 무형자산		- 미처분이익잉여금 (미처리결손금)	
- 특허권		-	
-			
(4) 기타비유동자산		(당기순손익)	
- 임차보증금		당기 : 원	
-		전기 : 원	
		자 본 총 계	
자 산 총 계		부 채 및 자 본 총 계	

작성방법

1. 출자금: 조합원(회원)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 [탈퇴(제명)한 조합원(회원)에게 환급한 출자금은 제외합니다.]
2. 자산 = 부채 + 자본
3. 예시된 세부항목("-")은 조합(센터)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.

② 손익계산서

구 분	금 액(원)	구 분	금 액(원)
I. 매출액		VI. 영업외수익	
- 000사업 수입		- 이자수익	
- 000 수입		- 지원금	
-		- 후원금	
II. 매출원가		- 회비	
- 판매원가		- 잡이익	
- 서비스원가		- 보조금	
-		-	
III. 매출총손익		VII. 영업외비용	
IV. 판매비와관리비		- 이자비용	
- 임직원급여		- 기부금	
- 퇴직급여		- 잡손실	
- 상여금		-	
- 복리후생비		VIII. 법인세차감전손익	
- 여비교통비		IX. 법인세등	
- 통신비		X. 당기순손익	
- 보험료			
- 감가상각비			
- 차량유지비			
- 회의비			
- 사무용품비			
- 소모품비			
- 업무추진비			
- 교육훈련비			
-			
V. 영업손익			

작성방법

1. 매출총손익 = 매출액 - 매출원가
2. 영업손익 = 매출총손익 - 판매비와관리비
3. 법인세차감전손익 = 영업손익 + 영업외수익 - 영업외비용
4. 당기순손익 = 법인세차감전손익 - 법인세등
5. 예시된 세부항목("-")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.

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

조직 개요	조합(센터)명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[총회]

일시	장소	조합원· 회원(명)	참석자(명)	결정사항	비고

[이사회]

일시	장소	임원(명)	참석자(명)	결정사항	비고

[기타]

일시	장소	대상자(명)	참석자(명)	결정사항	비고

[] 공제조합
[] 유통지원센터

사업결과 보고서

(쪽 중 1쪽)

조직 개요	조합(센터)명		전화번호	
	주 소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
조직 연혁	연월일	주요내용		
설립 목적				
조직도				
임원 현황	직위	성명	경력	검직 여부
조합원 (회원사) 현황	생산자	회수·선별사	재활용사	계
	개사	개사	개사	개사
직원 현황	명			

해당 연도
사업계획

해당 연도
사업 결과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)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업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7호의5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.</u> <u>③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은 별지 제17호의6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.</u> <u>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의 보고서로 한다.</u>
<u>제23조의2 (생 략)</u>	<u>제23조의3 (현행 제23조의2와 같음)</u>